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.

발 의 자 : 김태호 · 안상훈 · 이종배  
우재준 · 박충권 · 신성범  
김소희 · 유용원 · 정동만  
백종헌 · 김종양 · 김성원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·관리·보존·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,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K-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·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·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·협력,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·운영을 규정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-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(안 제10조 및 제33

조).

##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·협력 및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·운영

4의2. 국외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

제33조제1항 중 “박물관·미술관 협력망(이하 “협력망”이라)를 “국내 박물관·미술관 협력망(이하 “국내협력망”이라)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협력망의”를 “국내협력망 및 국외협력망의”로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국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상호 교류·협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 박물관·미술관 협력망(이하 “국외협력망”이라 한다)을 구성한다.

1. 박물관·미술관 자료의 현황
2. 박물관·미술관 자료의 상호 대여 체계 구비
3.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국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상호 교류·협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 박물관·미술관 협력망(이하 “국외협력망”이라 한다)을 구성한다.

1. 박물관·미술관 자료의 현황

2. 박물관·미술관 자료의 상호대여 체계 구비

3.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국내협력망 및 국외협력망의-----

-----

-----.